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


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21-76호 2021. 9. 28.(화)

차 례

입법예고(1)

공					
람					

발행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홍보실(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🕫 608-6602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-979호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」제7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28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**자치법규명**: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, 시행 2022. 1. 13.) 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·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 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(안 제4조).
- 다.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라.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을 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마.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4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: 기획홍보 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 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

(전화: 042-608-6061, FAX: 042-608-3811, E-mail: popoum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이현주 (전화: 042-608-606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주민이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(이하 "의견제출"이라 한다)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,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 -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4조(의견제출 제외 대상)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 - 2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
- 제5조(의견제출 방법)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이하 "의견제출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 -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"의견제출인"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7조(의견제출 검토)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 다.
 - 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

는 경우

- 2.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
- 제8조(의견의 반영)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차별대우의 금지 등)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

-				
	성명		[] 대표자	
			※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	표자인 경우 √표시
	 주소			
의견제출인	T			
※ 다수가 공동으로	전화번호			
의견제출을 하는 경우				
대표자 3명 이하를				
선정하여 표시, 의견제출인이 다수인	전자우편			
경우 별지 사용				
공동 의견제출	 []해당 []	해당되지 않음	 대표자 인원 :	명
		에 6 시시 (대표자 단현 :	o
01.74				
의견				
※ 취지와 이유를				
명확하게 밝혀 작성				
 참고자료				
※ 필요한 경우 제출,				
분량이 많은 경우				
별지 사용 				
「지방자치법」 제	데20조 및 「대전광역시	규칙의 제정과 개정ㆍ	폐지 의견 제출 등0	세 관한 조례 :
_	가 위와 같이 의견을 제·			
			년	월 일
		의견제출인		(서명 또는 인)
레란크	사하자 그를			
네릭T	'청장 귀하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	자치법규명	:	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>	제정과	개정 • 폐지	의견	제출	등에
			관한 조례안					
() 성	명	•					

O 생 년 월 일:

O 주 소:

O 연 락 처:

O 의 견:

조례안 내용	의	견	비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